

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서

(판매기업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함)과 _____(이하 “구매기업”이라 함) 사이에 체결된 무보증구매론 계약에 기초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“물품 등”이라 함)의 판매대금 수금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(목적)

이 약정은 은행과 구매기업 사이의 무보증구매론 계약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“구매기업”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“판매기업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“벤더기업”이라 함은 판매기업(=1차 협력기업)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기업을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명세”(이하 “승인명세”라 함)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판매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금액”(이하 “승인금액”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.
- “구매기업결제일”(이하 “결제일”이라 함)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승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(이하 8 호에서 정의한 “벤더입금”을 포함함)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“벤더입금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“지급승인기간”이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기간”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선입금하는 경우, 선입금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.
- “일반거래”라 함은 승인명세 전송 및 은행의 지급승인과 동시에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매매보호거래”라 함은 상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명세 전송 후 구매기업의 권리이전(인수) 절차 및 은행의 지급승인에 의해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선입금가능일”라 함은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최초 시작일을 말합니다.
- “선입금가능비율”이라 함은 승인명세 건별 판매기업이 선입금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며, 구매기업 계약시 사전에 결정됩니다.
- “기업인터넷뱅킹”이라 함은 기업뱅킹, Hana CBS, BiCNET 등을 말합니다.
- “전자적인 방식”이라 함은 구매자료 전송, 선입금 등 무보증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“무보증구매론”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하지 않으며,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만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매론을 말합니다. 다만, 구매기업과 일정액의 여신한도를 약정한 경우 약정한도 범위내에서는 판매기업이 선입금을 통하여 판매대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(입금계좌의 지정)

판매기업 입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.

(판매기업 본인의 입금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은행명	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-----	-----	-----------	------

--	--	--

제 4 조(승인명세의 취소, 변경 및 제한)

- ① 승인명세의 취소 및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.
 - 1.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을 이유로 승인명세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명세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 - 가. 판매기업이 승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을 실행한 경우
 - 나.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
 - 2. 구매기업이 승인명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고, 취소된 승인명세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 - 3. 매매보호거래시 결제일 전영업일까지 권리이전(인수) 등록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 - 4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금액에 대하여는, 은행은 강제로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5. 은행은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를 판매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명세 전송에 의한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.
 - 1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이 발생하는 등,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
 - 2. 구매기업이 약정한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 “제 4 조(감액, 정지 조항)”에 의하여 은행이 구매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
 - 3. 승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을 원인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경우
 - 4. 기타 구매기업과 체결한 약정 상 지급승인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

제 5 조(판매대금의 입금)

- ① 은행은 다음과 같이 판매대금 입금업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.
 - 1. 선입금신청시 : 선입금 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 - 2. 벤더입금신청시 :
 - 가. 벤더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: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
 - 나. 판매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: 벤더입금 신청금액 전액을 벤더기업 계좌에 입금하고 판매기업의 계좌에서 선입금이자 및 수수료를 출금하기로 합니다. 다만, 판매기업의 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 벤더입금신청이 불가합니다.
 - 3. 만기입금시 :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에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. 단, 매매보호거래시 구매기업이 권리이전(인수) 등록하지 않은 승인명세에 대해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.
- ② 선입금은 승인명세 건별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이상 분할하여 선입금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③ 판매기업이 선입금 신청시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인터넷뱅킹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기로 하며, 이때 제출하는 “납품대금선입금신청서” 상의 인감이 본인의 입금계좌 인감일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신청한 것으로 합니다.
- ④ 판매기업의 입금계좌 지정은행이 타행인 경우, 신청 건별로 선입금 가능한 최고금액은 일십억원으로 합니다.

제 6 조(대출이자 및 수수료의 운영기준)

대금입금시 발생하는 선입금이자 및 각종 수수료는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금리 및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.

- 1. 선입금이자는 선입금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정구하는 이자로서 판매기업이 부담합니다.
- 2. 무보증구매론 이용시 아래와 같이 지급승인 건별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
 - 가. 취급수수료 : 지급승인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, 구매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부담주체가 정해집니다.

나. 벤더취급수수료 : 판매기업이 신청하는 벤더입금 건별 부담하는 수수료로서, 벤더입금 건별 일천원(₩1,000)을 부담키로 하며, 벤더입금 신청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(선입금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입금을 제한합니다.

1. 승인명세에 대하여 (가)압류, 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 8 조에 따라 지급보류가 등록된 경우
2. 구매기업이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제 7 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에 해당되는 등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여신거래가 정지되는 경우
3. 구매기업의 요청 또는 당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에 의해 선입금 금지가 등록된 경우
4. 허위매출,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판매대금 수금 용도 외의 지급승인을 받는 등,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이 무보증구매론 계약을 위반한 경우
5. 구매기업과 계약한 여신(한도)금액 또는 선입금 가능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

제 8 조(지급보류)

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등이 구매기업에게 송달되는 경우, 구매기업의 신청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
1. 판매기업이 선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명세를 취소한 후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에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.
2. 선입금 등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보류 등록하는 경우
 - 가. 승인명세의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하기로 합니다.
 - 나. 지급보류 등록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결제일 도래시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지급금 계정에 입금 처리하기로 합니다.
 - 다. 미지급금계정에 입금된 금원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9 조(이용시간)

- ① 은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은행 영업시간중 가능하며,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
조회	24 시간	가능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
구매자료승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 까지) 08:00~20:00(EDI 16:00 까지)	불가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
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 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- 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0 조(정보제공의 동의)

본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판매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선입금 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구매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제 11 조(계약의 체결 및 변경)

- ① 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이용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제 12 조(면책)

- 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본 계약의 이용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3 조(효력)

- ① 본 약정서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.
- ② 은행과 판매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제 14 조(관할법원의 합의)

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본점, 지역본부 또는 판매기업의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제 15 조(기타 특약사항)

(서명날인)

20 년 월 일

판매기업 : _____ (인)

주 소 :

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거래 신청서

본인확인 및 인감대조	담당	책임자	관리자	부점장

1. 중심기업(구매기업) 정보

기업명		사업자등록번호		중심기업코드	
-----	--	---------	--	--------	--

2. 판매기업 정보

(협력기업코드 :)

법인명 (또는 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	
대표이사 (또는 대표자명)		대표이사(대표자) 생년월일	
업 태 주요취급품목		종 목	
사업장 주소 전화번호	(우편번호:) <input type="text"/> <input type="text"/> 팩스번호 <input type="text"/>		
기업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업	<input type="checkbox"/> 소기업
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 및 기타

※ 해당되는 기업규모의 “□”에 “✓” 표시 합니다.

3. 담당자 정보

담당부서		담당자명	
담당자전화번호 담당자팩스번호		담당자휴대전화번호 담당자이메일	

4. 첨부서류

- (1) 법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
- (2)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, 개인인감증명서(본인 자서 날인시 생략가능), 대표자 실명확인증표
- (3) 대리인에 의한 약정시 추가서류
 - ① 법인사업자 : 위임장(법인인감 날인), 법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 - ② 개인사업자 : 위임장(개인인감 날인), 개인인감증명서, 수임인 실명확인증표
- (4) 공동대표인 경우
 - ① 법인사업자 : 대표이사 전원이 연서 및 날인하여야 합니다.
 - ②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기업 약정 및 판매대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사업자 1인과 약정 체결합니다.
- (5) 위의 기본서류 외에 판매기업 이용약정시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본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무보증구매론 판매기업 약정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판매기업) : _____ (인)